

2017. 6.14.(수) ~
6.28.(수) / 15일간

제2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	3
2.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4
3.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.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
5.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	7
6.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8
7.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9
8.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10
9.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	11
10. 장성군 유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	11
11. 2016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의 건	12
12.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	15
13. 2016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	16

심사결과

의안명	의결결과
○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○ 장성군 유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	원안가결
○ 2016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	원안가결
○ 201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	원안가결
○ 201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안	원안가결

주요 내용

1.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추정가격 30%이상 상승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,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위 치 :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447-1번지 일원
 - 사업규모 : 부지 76,088㎡, 건축연면적 2,730㎡
 - 공설운동장(관람석 5,000석), 보조경기장1, 트랙8 등
 - 사업기간 : 2017. 11. ~ 2020. 12.
 - 소요예산비 변경 : 22,900백만원(국비 6,000, 군비 16,900)

구 분	당 초	변경	증감	사유
계	22,000	22,900	900	
토지매입	2,000	2,900	900	매입비 상승
건물신축	6,000	6,000		
용역비	1,200	1,200		
조성비	12,800	12,800		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2.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(직장체육의 진흥)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 - 장성군청 조정선수단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(안 제1조)
 - 설치 종목 및 구성 등 (안 제2조~제5조)
 -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 - 선수의 보수,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7조)
 - 단원의 복무 및 신분예 관한 사항(안 제18조~제24조)
 -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27조)
 - 선수단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31조)
 -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32조)
- 법적근거
 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3.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지원대상(안 제3조) :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
 - 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 규정 ⇒ 보훈처장이 법 제2조제2호의 단서 규정
 - 지원범위(안 제4조) : 지원금 상향 및 어휘 순화
 - 참전명예수당 매월 40,000원 ⇒ 매월 70,000원
 - 장제비 ⇒ 사망위로금
 - 지급방법 및 시기(안 제5조)
 -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⇒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- 법적근거
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4.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 관리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이용료 결정 기준 관련 단서조항 신설 및 한글맞춤법 준용(안 제22조제4항)
 - 공유재산 대부료, 사용료, 교환차금, 매각대금, 변상금 및 과오납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 기준 변경
 - (당초) 경우에 따라 이자율 구분 적용(年 2% ~ 6%)
 - (변경)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일괄 적용
 - 수의매각 요건 신설(안 제40조)
 - 사도에 편입될 공유지를 그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 -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지에 맞닿아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로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- 법적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 - 분할납부 : 제22조제2항, 제32조제2항, 제37조제1항, 제81조제2항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 - 「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5.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17. 6. 7.

▪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

▪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)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 종전 「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」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에 제정하고자 함
-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(안 제3조)

▪ 법적근거

○ 「지방세징수법」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6.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법」이 개정(법률 14115호, 2016. 3.29. 공포, 2017. 3. 30. 시행)되었고, 위임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일부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준칙안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시각장애인의 차량 대체취득 감면 규정을 보완하여 1년이상 보유 차량의 대체 취득시만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 명확화(안 제2조)
 -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조정(안 제3조)
 - 75% 감면 → 50% 감면 (2018. 12. 31까지)
 -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조정(안 제5조)
 - 지정 문화재 부동산 : 100% → 100% (2017. 12. 31까지)
 -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: 100% → 50% (2017. 12. 31까지)
 - 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규정과 취득시점 명확화(안 제8조)
 - 휴·폐업 공장 취득시 휴·폐업 기간 : 휴업(6개월 이상), 폐업(3개월 이상)
 - 기업도시 등에 대한 감면을 조정(안 제9조)
 - 100% 감면 → 50% 감면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시장현대화 사업을 촉진·육성하기 위해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0조)
 - 재산세 100% 감면 (2018. 12. 31까지)
- 법적근거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7.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되면서,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」에 이관하고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“하위법령”을 추가(안 제1조)
 -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·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 -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(안 제4조, 제5조)
 - 현행 「지방세기본법」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동일 내용 삭제함
 -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는 새로 분리 제정하는 「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함
 - 마을세무사 위촉 근거를 규정(안 제8조)
- 법적근거
 -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8.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17. 6. 7.

▪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

○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.

▪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변경

- (현행)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
- (개정)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7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

○ 장성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(안 제9조)

-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(위원장 부군수, 15명 이내)

○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 등(안 제19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(안 제22조)

-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9.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한 사항(등록기준 대수)을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 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법적근거
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(국토교통부령 제 335호, 2016.7.4. 일부개정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10.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7. 6. 7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·수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함
- 주요내용
 - 관리·운영 대상
 - 운영위원회 설치
 - 위탁기간, 위탁 운영대상, 위탁비용, 위·수탁 해지 등
- 법적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11. 2016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

▪ 제출일자 : 2017. 5. 29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장성군 세입·세출 결산을 장성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가. 세입·세출결산

◦ 세입·세출 결산 내역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
계	476,569,430,800	490,366,875,420	345,092,336,010	145,274,539,410
일반회계	461,384,520,570	474,353,026,350	337,572,490,460	136,780,535,890
특별회계	15,184,910,230	16,013,849,070	7,519,845,550	8,494,003,520

◦ 세계잉여금 내역

(단위 : 원)

회 계 별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	보조금잔액	순세계잉여금
계	145,274,539,410	34,930,997,960	35,716,576,350	3,450,783,700	4,769,020,574	66,407,160,826
일반회계	136,780,535,890	34,775,997,960	35,298,665,350	3,450,783,700	4,769,020,574	58,486,068,306
특별회계	8,494,003,520	155,000,000	417,911,000	-	-	7,921,092,520

나. 기금 결산

◦ 2016년말 기금 현재액은 6,65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재 난 관 리 기 금 : 1,570백만원
- 체 육 진 흥 기 금 : 688백만원
- 사 회 복 지 기 금 : 3,436백만원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: 897백만원
- 식 품 진 흥 기 금 : 59백만원

다. 채권 결산

- 2016년말 채권 현재액은 5,005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일 반 회 계 : 3,678백만원
 - 특 별 회 계 : 1,319백만원
 - 사 회 복 지 기 금 : 8백만원

라. 채무 결산

- 2016년말 채무 현재액은 8,97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하수슬러지처리사업 : 104백만원
 - 농 공 단 지 : 4,300백만원
 - 드 럽 빌 특 별 회 계 : 4,567백만원

마. 공유재산 결산

- 2016년말 공유(군유)재산 현재액은 741,58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 - 토 지 : 24,894천 m² 243,089백만원
 - 건 물 : 174천 m² 193,850백만원
 - 입 목 죽 : 3,940백만원
 - 공 작 물 : 290,066백만원
 - 기 계 기 구 : 5,367백만원
 - 무 체 재 산 권 : 4,662백만원
 - 용 의 물 건 : 454백만원
 - 회 원 권 : 154백만원

바. 물품 결산

- 2016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690개 5,37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전 년 도 말 : 671개 4,987백만원
- 신 규 취 득 등 : 64개 880백만원
- 매 각 : 45개 489백만원

사. 재무회계 결산

- 재정상태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자 산(A)	부 채(B)	순자산(A-B)	비 고
2016년도	2,183,917	22,710	2,161,207	

- 재정운영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익(A)	비 용(B)	운영차액(A-B)	비 고
2016년도	333,683	250,143	83,540	

- 순자산변동보고서

(단위 : 백만원)

기초순자산	운영차액	순자산증가	순자산감소	기말순자산
2,181,790	83,540	2,377	106,500	2,161,207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1항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12.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▪ 제출일자 : 2017. 5. 29.

▪ 제출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(일반회계) : 21,601,756,000원

○ 예비비지출 결정액(일반회계) : 475,978,000원

○ 예비비 지출액 : 188,389,530원

○ 이 월 액 : -원

○ 집행잔액 : 287,588,470원

○ 주요 지출내역

· 대설피해 복구 계획 수립관련 복구비 지원 : 57,835,300원

· 구제역 차단방역초소 운영 : 58,921,490원

· AI 양성판정에 따른 살처분 및 차단방역 : 71,632,740원

▪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

13.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

- 제출일자 : 2017. 5. 29.

- 제출자 : 장성군수

-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 결과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」

- 주요내용

○ 기금 결산

(단위 : 원)

기금명	전년도말 조성액 (가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마)=(가)+(나)
		계 (나)=(다)-(라)	수입액 (다)	지출액 (라)	
제5종	6,308,824,630	341,727,650	810,518,240	468,790,590	6,650,552,280
재난관리기금	1,496,072,810	74,469,390	412,569,980	338,100,590	1,570,542,200
체육진흥기금	672,813,770	15,128,800	15,128,800	0	687,942,570
사회복지기금	3,435,564,660	244,150	54,834,150	54,590,000	3,435,808,810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649,010,260	247,952,480	317,952,480	70,000,000	896,962,740
식품진흥기금	55,363,130	3,932,830	10,032,830	6,100,000	59,295,960

-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제2항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7. 6. 28.)